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6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'96. 2. 13공포시행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명변경된 심의회 위원장, 부위원장의 직명을 정비하여 심의회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

주요 골자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의료보호 심의회조례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명 변경
(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2항)

- 직명 변경사항

· 위 원 장 : 보사환경국장 ⇒ 사회복지국장

· 부 위 원 장 : 사회과장 ⇒ 사회복지과장

근거 법령 : 의료보호법제3조(의료보호심의위원회)

기타 참고자료

1.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1 부
2. 신·구조문 대조표 1 부
3. 관계법령 발췌문 1 부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"보사환경국장", "사회과장" 을 각각 "사회복지국장",
"사회복지과장" 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